

회 의 록

(2014학년도 제3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3차-1) 2015. 2. 12.(목) 16:00~17:30 (3차-2) 2015. 2. 13.(금) 16:30~18:00 (3차-3) 2015. 2. 16.(월) 10:30~12:00	
참 석 현 황	3차-1	- 위원(7명) : 위원장 안영진, 교직원위원 임철성, 교직원위원 백성준, 교직원위원 김현재, 학생위원 정상엽, 학생위원 박현이, 학생위원 김현조, 기성회부회장 전종현 - 간사(1명) : 재정관리과 배태관 - 배석(1명) : 재정관리과 한영석
	3차-2	- 위원(7명) : 위원장 안영진, 교직원위원 임철성, 교직원위원 백성준, 교직원위원 김현재, 기성회부회장 전종현, 학생위원 정상엽, 학생위원 김현조 - 간사(2명) : 재정관리과 배태관, 재무과 오선진 - 배석(1명) : 재정관리과 한영석
	3차-3	- 위원(8명) : 위원장 안영진, 교직원위원 임철성, 교직원위원 백성준, 교직원위원 김현재, 외부관련전문가 송진희, 학생위원 정상엽, 학생위원 김현조, 학생위원 장민수 - 간사(2명) : 재정관리과 배태관, 재무과 오선진 - 배석(1명) : 재정관리과 한영석
장 소	재정관리본부 회의실(본부 6층)	

안건: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징수방안

논의 사항(3차-1)

1. 개회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 간사로부터 전차 회의록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3.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징수방안 논의

- 위원장 : 지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음.
- 학생위원 :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된 사항인 신입생 등록고지 시 현재 상황 및 관련 법령 미 제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학생위원들과 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재무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청함.
- 교직원위원 :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지 확인 요청함.
- 학생위원 : 신입생 등록금 고지 시 등록예치금으로 하되 등록예치금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안내문을 학생위원들과 논의한 후 고지하기로 했음에도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안내문이 고지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청함.
- 교직원위원 : 합의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신입생 등록고지가 촉박한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문 초안을 만들었던 상황이었음을 설명함.
- 학생위원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내문(안)을 제시하였지만, ‘불법 기성회계’ 등의 용어는 본부 입장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여 총학생회장 명의로라도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고지된 상황임을 설명함.
- 교직원위원 : 등록금 고지는 총장명의로 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했던 안내문(안)은 본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명함.
- 위원장 : 재무과장님은 본부 입장에서 안내문(안)을 만들었고, 학생위원들도 안내문(안)을 만들어 왔으나, ‘불법 기성회계’ 등의 용어는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제를 해보자고 하던 중 의견차가 있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설명함.

- **학생위원** : 학생위원들과 논의하기 전부터 안내문(안)이 총장님에게 보고가 된 상황이었으며, 논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지 않는다면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교직원위원** : 고지시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작성하여 총장님 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보고를 한건 사실임. 추후 학생위원들의 안내문(안)에 대해 전부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반영이 되었음을 설명하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나 동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요청함.
- **학생위원** : 기 공지한 안내문에는 기성회계가 왜 불법판정을 받았으며, 등록예치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직원위원** : 학생위원들과 논의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된 문안이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재무과장님이 양해를 구했으니, 학생들이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늦게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함.
- **교직원위원** : 신입생 고지 부분은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합의된 문안으로 공지하지 못했지만 재학생 고지 시 학생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요청함.
- **학생위원** : 재학생 고지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이고, 신입생 고지 및 징수행위는 이미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다면 금번 등록금심의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교직원위원** :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신입생들에게 등록금고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만 학생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문안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양해를 구하였으니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함.

- 학생위원 : 촉박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학생위원들의 의견은 등록금 고지 전에 전달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명확한 사과가 없으면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학생위원 전원 퇴장함.)

(학생위원 전원 퇴장으로 정회 후 2015. 2. 13.(금) 16:30 속개하기로 함)

□ 논의 사항(3차-2)

1. 속개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기에 속개를 선언함.

2.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징수방안 논의

- 위원장 : 지난 3차-1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음.
- 학생위원 : 2차 등록금심의회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사과, 사실관계, 사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다시 요청함.
- 위원장 : 신입생 등록금 고지 안내 실무 추진과정에서 학생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학생위원 : 위원장님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재무과에서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사과를 요청함.
- 교직원위원 : 촉박한 상황에서 내부논의를 통해 작성된 안내문(안)에 대해 총장님에게 사전보고 측면에서 보고하였으나 확정된 안은 아니었음. 작성된 안을 가지고 학생위원들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학생위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측면에 있어 사과함.
- 학생위원 : 신입생들에 대한 고지 및 납부는 이미 진행된 상황인데, 신입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요청함.

- **학생위원** : 신입생들에게 등록예치금의 문제점을 문자메세지로 알리기 위해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교직원위원** : 신입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설명함.
- **위원장** :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신입생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논의를 통해 강구해 보았으면 함.
- **학생위원** :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신입생들에 대한 등록예치금을 전액 환불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요청함.
- **교직원위원** :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공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요청함.
- **교직원위원** : 절차상의 문제이고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으니 그 다음 논의를 요청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요구사항인 신입생들의 등록금 고지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금회 안전인 재학생 고지방법에 대해 논의를 요청함
- **간사** : 타대학 등록금 책정 현황 및 징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
- **위원장** : 현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설명하고, 재학생 등록금 징수방법에 대해 등록금으로 할 것인지 등록예치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함
- **기성회부회장** :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현재 상황에 맞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 학생위원 : 재학생의 징수시기를 법안 통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 교직원위원 : 징수시기를 연기함으로써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요청함.
- 학생위원 : 등록금 추가징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학자금 대출 또한 추가징수 기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교직원위원 : 법정 등록금 수납기간이 교육부 훈령으로 학기개시 10일 전으로 명시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함.
- 간사 : 징수기간 연기 시 기본적인 예산집행(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
- 교직원위원 : 법적으로 가능여부 보다 징수기간 연기 시 학교 운영이나,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됨.
- 위원장 : 재학생도 신입생과 동일한 방향으로 등록예치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도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등록예치금으로 징수를 반대하며, 수업료분만 징수해야 함.
- 교직원위원 : 수업료분만 고지 시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피해가 예상됨.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징수에 반대하며 그에 따른 피해대책은 학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법적근거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함.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함.

- **교직원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상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등록금 징수방법까지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함.
- **위원장** : 등록금의 구체적인 징수방법까지는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합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임을 설명함.
- **교직원위원** : 현실적으로 학교피해도 있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위원장** : 학생위원들 입장에서 미진하고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입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학생위원** : 반대입장을 밝힘.
- **교직원위원** : 현재 예측되는 문제들이 학교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요청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바도 알겠지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현재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음.
- **학생위원** : 입장변화 없음.
- **교직원위원** : 입장을 바꾸라는 내용은 아니며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니 이해해 주길 바람.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 징수를 반대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준다면 동의하겠음.
- **위원장** :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생위원들의 대안 제시를 요청함.

(5분간 정회를 선언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이 등록예치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신입생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 듯함.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수시기를 법제정 이후로 연기해야 되며 징수시기 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학교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함.
- **교직원위원** : 학생위원들의 입장은 등록예치금으로 징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나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요청함.
- **학생위원** : 징수시기를 법제정 이후로 연기해야함.
- **교직원위원** : 징수시기를 법제정 이후로 연기 시 복학생 등록 등과 같은 학사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징수기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요청함.
- **학생위원** : 등록예치금 징수를 반대함.
- **학생위원** :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없다면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교직원위원** : 학생위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논의를 요청함.

(정회 후 2015. 2. 16.(월) 10:00 속개하기로 함)

□ 논의 사항(3차-3)

1. 속개 선언

⇒ 총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기에 속개를 선언함.

2.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징수방안 논의

- 위원장 : 지난 3차-2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음.
 - 학생위원들의 입장은 등록예치금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하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징수기간을 법제정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는 입장임.
 - 반면, 당장 징수방법이 결정되지 않으면 행정적 불편보다 장학금, 학자금 대출, 복학생 문제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징수방법을 확정하자는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임.
- 교직원위원 : 행정적으로 고지시기를 늦춘다면 언제까지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함.
- 간사 : 학부모들에게 계속 민원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내일(16일) 9시까지는 고지를 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음.
- 학생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일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이의를 제기함.
- 간사 :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길 바람.
- 교직원위원 : 등록금 징수방법이 결정되지 않을 시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징수방법이 결정되어 고지 되어야 할 상황임. 학생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적인 고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기를 했으면 하지만 설연휴도 있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함.

- **외부전문가위원** : 신입생에 대한 고지 및 징수가 이미 등록예치금 형태로 진행된 상황이므로 재학생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지시기를 미룰 경우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됨.
- **교직원위원** : 등록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하는 것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환이 가능할 것이고, 집행은 하지 않고 예치금 형태로 가지고 있으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학생회 차원의 안내를 통해 수업료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우선 납부하는 안을 제시함.
- **교직원위원** : 근본적으로 등록금 징수방법 결정에 대한 책임은 행정 부서에 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닌 이상 학생위원, 교직원위원,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부서 책임 하에 징수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 **위원장** :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 향후 예상되는 문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등록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함.
- **교직원위원** : 등록예치금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학생위원들의 입장이지만 법이 통과하면 등록예치금을 등록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고지 시 현재는 등록예치금의 형태로 징수하지만 법 통과 시 법적근거에 의해 등록금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의하는 학부모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 **교직원위원** : 등록금심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드렸으므로 최종 결정은 징수 책임부서에서 의사결정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

- 학생위원 : 입장변화는 없으며, 불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요청함.
- 교직원위원 : 불법여부 보다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이니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요청함.
- 위원장 : (5분간 정회를 선언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정리된 입장을 요청함.
- 학생위원 : 입장변화는 없음
- 위원장 : 학생위원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질 수 없는 부분들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최종의견을 요청함.
- 교직원위원 :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이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안으로 등록예치금 형태로 징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 등록금심의 위원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책임부서에서 징수방법을 결정해주시길 요청하며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추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면 함.
- 교직원위원 : 법통과 이후 법 시행 시 까지 등록금 미징수로 인한 세입부족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든 등록금 징수는 이루어져야 함.
- 교직원위원 : 징수기간 연장, 고지 시 안내문에 관해서는 협의의 여지가 있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지행위는 이루어져야 함.
- 외부전문가위원 : 신입생의 경우 등록예치금 형태로 이미 징수를 했기

때문에 재학생도 등록예치금 형태로 진행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했으면 함.

- 학생위원 : 신입생에 대해 징수한 등록예치금을 반환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했으면 함.
- 위원장 : 학생위원들 최종의견 요청
- 학생위원 : 입장변화 없음.
- 위원장 : 이상으로 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 2. 16.

작성자 : 간사(재정관리과) 배 태 관

확인자 : 위원장(재정관리본부) 안 영 진